

##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□ 제안이유

- 국제교류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해외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하여
- 우리시의 국제교류업무추진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우리시에 제공하여 해외동향을 파악하고
- 우리시 방문단이 해당국가를 방문할 때, 방문단에게 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, 효율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명예주재관은 市の 국제교류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파주시 국제교류단이나 통상대표단 등이 해당지역을 공식방문 할 경우 이들에 대한 현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(안 제2조)
- 명예주재관은 市の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한인회의 간부 등의 자중시장이 위촉한다. (안 제3조)
- 시장은 명예주재관을 市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·체재비 등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. (안 제6조)

## 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제정안건은 민선지방자치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파주시의 국제교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
  - 교류당사국 도시에 거주하면서 현지사정에 밝은 재외동포나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교류상대국의 전반적인 실태를 잘 아는 기업체 임직원을 파주시해외 명예주재관으로 위촉,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
  - 2000년 11월부터 운영중인 『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조례』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- 특히, 본 조례안은 위촉대상자를 관련국 해외거주자 또는 상시방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촉대상자를 얼마만큼 잘 선정하느냐에 따라 동 조례안의 실효성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며,
- 주재관의 활동과 관련한 경비지원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토록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가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면서 명예주재관이 외자유치나 해외수출증진에 공헌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앞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.